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8
----------	------

제출연월일: 2021. 9. 3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 이의신청 기간 변경(안 제19조)

- 현행: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변경: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3817호, 2021. 9. 3.)

라. 입법예고: 2021. 9. 6. ~ 9. 27.(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로, “구청장의 사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를 “사무 중에서 기존 수탁기관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 또는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사무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는”을 “하고자 할”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무방식으로의”를 “사무방식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로, “제출토록 하고”를 “제출하도

록 해야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을 “구청장은”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 시 배점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 · 위원회 · ·”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을 “심사 또는 현장을 확인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로,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된다”를 “제척(除斥)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기관으로 선정된”을 “수탁기관 선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운영을

6 (제239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포기한 것으로 본다”를 “체결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4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를 “(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사함에 있어서는”을 “행사할 경우”로,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를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때”를 “경우”로, “및”을 “또는”로 한다.

제14조 중 “따른”을 “따라”로, “ 및”을 “또는”으로, “때”를 “경우”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업변경 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사업계획 변경
2. 시설 증축·개축
3.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기관이 행한 위탁사무”를 “위탁사무”로,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를

“정지하고자 할 경우 그”로, “의견진술의”를 “의견진술”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관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등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수탁사무의”를 “수탁사무”로, “구분하여 명시한”을 “기록한”으로,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서,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밋”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공익상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4호”로, “명시하여 서면”을 “적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4. 수탁자 스스로 해지를 원할 경우

제22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 없다.”를 “수 없으며,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도 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사무를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u>구청장의 사무</u>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u>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민간위탁</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 ----- <u>사무</u> ----- ----- -----. 2. (현행과 같음) 3. ----- ----- <u>사무 중에서 기존 수탁기관과</u> ----- ----- -----

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 7. (생략)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

-----.

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 않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 하고자 할 -----
----- 검토해야 -----.

1. ---- 사무방식으로 -----

2. ~ 7. (현행과 같음)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

----- 경우-----

----- 경우-----

③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③ 구청장은 -----

-----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④ -----
----- 울산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

제9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

-----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호선(互選)한다.

④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 의원 -----
--

2. ~ 5. (생략)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으로 선정

2.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심사 또는 현장을 확인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
--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제척(除斥)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체결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탁기관 선정 -----

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
약 체결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④ 민간위탁 계약서는 생산년도
다음해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략)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함에 있어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
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
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
다.

----- 체결해야 한다.이 경우 계
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수탁·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④ -----
----- 보존해야 -----.

제12조(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사
할 경우 -----
-----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해야 -
-----.

제13조(사무처리의 지원) -----

----- 경우 -----

----- 또는 -----
-----.

제14조(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탁기관이 사용하게 할 때에는 민간위탁 계약서와는 별도로 물품의 항목별 점검상태 등 인계·인수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주의사항) 수탁기관의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업변경 사전 승인) 수탁자는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축·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 -
----- 따라 -----
또는 -----
--- 경우 -----

----- 비치
해야 ----.

제15조(수탁기관의 주의사항) -----

-----.

1. -----

----- 수행해야 -----.
2. -----

----- 할 수
없다.
3. -----

-----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변경 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사업계획 변경
2. 시설 증축·개축

제17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행한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

3.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제17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관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등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탁사무 -----
----- 정지하고자
할 경우 그 -----
----- 의견진술 -----.

제18조(사무편람) ① ----- 수탁사무 -----

----- 기록한
----- 작성·비치해야 -----.

② -----
-- 경우 ----- 받아야 -----.

제19조(이의신청) ① -----

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서,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삭 제>

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임직원의 배임·횡령으로 1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② (생략)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위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

----- 해야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또는 -----

4. 수탁자 스스로 해지를 원할 경우

5. ----- 위탁 -----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제4호 -----

탁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제3자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또한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적은 -----
----- 제출해야 -----
----- . -----
----- 그렇지 않다. -----

④ -----

----- 취해야 -----
----- . -----

제22조(제3자 위탁 등 금지) -----
-- 따라 -----

- 수 없으며,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도 할 수 없다. <후단 삭제>
<삭 제>

근거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민원 거부처분 일자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여영현
- 연락처: (052)290-3142